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8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김지향,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영한, 박칠성, 박환희,
서준오,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종태, 최민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 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다자녀 혜택 대상이 기존 3자녀에 머물러 있어,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제대혈 비용 면제 대상을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대상을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3자녀→2자녀)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마목).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지(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두고, 이식제 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다둥이 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u></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비용의 감면)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3013100000014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지향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선동규 주무관

접수일 : 2023.01.31.

회신일 : 2023.02.13.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비용의 감면)제1항제2호마목을 ‘다둥이 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 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으로 개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비용의 감면)제1항제2호마목 개정 내용에 따라 비용(제대혈 기증에 따른 세외수입감소)이 발생 하나, 최근 3년간 제대혈을 공급받은 대상자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포함하여 면제 받은 사례가 없어 해당부서 확인결과 대상자 규모와 지원방법 미정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제대혈 공급실적〉

구 분	‘20년	‘21년	‘22년
공급인원	41명	52명	36명
공급실적	57Unit	77Unit	55Unit
공급비용(세외수입)	117,879,990원	159,241,390원	113,743,850원

※ 제대혈 1Unit - 2,068,070원, 최근 3년간 공급실적 중 면제받은 사례 없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주 무 관 선 동 규

☎ 02-2180-7953

e-mail : abasiclife@seoul.go.kr